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7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박승진,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신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최근 대규모 시위 및 마라톤 등 행사로 인해 서울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민 불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는 이러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정상운행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 차량 확보,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책’ 수립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 및 도시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에게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함. (안 제19조 신설)

나.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중교통 운행대책에는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기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
2. 주요 노선의 감축·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
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
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u></p> <p><u>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u> <u>2. 주요 노선의 감축·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u> <u>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u> <u>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u> <u>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u></p>

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에게 '비상상황 시 대중교통 운행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안 제19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교통실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대중교통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19조	교통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등	718,758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계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